
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심초등학교의 체육장 보유면적이 기준면적보다 과부족(1,002㎡)하므로 ○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학교와 인접한 공원용지중 체육장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편입하고 ○ 기존 학교용지 중 입상이 양호한 곳을 공원용지로 대체 지정코자 도시계획 변경결정 하고자 함. 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1. 4. 7 :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1. 7. 2 : 구의회 의견청취 (원안채택) <p>5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: 이견 없음 ○ 주민의견청취 결과 : 의견 없음 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938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제출년월일 : 2001. 8. 20 .</td> <td style="width: 55%;">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전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) 변경결정</p> <p>2. 입안 내용</p>	의안 번호	938	제출년월일 : 2001. 8. 20 .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								
의안 번호	938	제출년월일 : 2001. 8. 20 .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
<p>○ 도시계획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) 변경결정</p>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>용 도 지 역</th> <th rowspan="2">면 적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기 정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광진구 구의동 59-36 일대</td> <td>일반주거지역</td> <td>제 2 종 일반주거지역</td> <td>3,669.4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(㎡)	비 고	기 정	변 경	광진구 구의동 59-36 일대	일반주거지역	제 2 종 일반주거지역	3,669.4	
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(㎡)	비 고									
	기 정	변 경											
광진구 구의동 59-36 일대	일반주거지역	제 2 종 일반주거지역	3,669.4										
<p>3. 입안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부지는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2000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동차정류장 해제 안건을 상정 심의결과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주거지역 세분을 동시에 하도록 보류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함. <p>4. 추진 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977. 8. 22 :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(서울시 고시 제288호) ○ 2000. 4. 29 :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변경(폐지)결정 신청(구→시) ○ 2000. 11. 15 :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(심의결과 : 보류) ○ 2001. 3. 7 : 광진구에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○ 2001. 7. 26 : 자동차정류장부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(구 → 시) <p>5. 참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: 제출의견 없음 ○ 상임기획단 의견 :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해체시 공공기여방안(가로변림지공원 형태의 개방공간 조성 등) 검토요망, 2종일반주거 	<p>거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과 의견 :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가능하다고 판단됨, 다만 아차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이면지역이 저층 주택가이므로 천호대로변 개방감 확보,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수립 필요. <p>※ 본 자동차정류장은 마포구에서 구의동간 55번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자인 동부운수주식회사가 '77. 3. 11. 증차로 인한 기존 노외주차장시설(668평)을 확장코자 시내버스 주차장(1,110평)신청을 하여 '77.7.21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로 결정되었으나 '77. 8. 22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으로 변경결정된 시설임.</p> <p>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</p>												

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3.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
4. 기타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중 최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